

제314회 임시회
2012.09.21(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12.09.2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 2012년 08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09월 04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09월 18일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가. 제안이유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4항에 의거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

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산업체의 구분 및 협조(안 제3조, 제4조)
-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치 및 부설 고등학교의 설립(안 제5조, 제6조)
-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치 및 부설 고등학교의 설립 인가절차, 학과 및 교육과정, 입학방법, 경비부담, 수업료 등의 면제, 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의 경비부담 등, 경비의 납부 및 집행잔액의 사용, 교직원, 수당지급, 교육용 시설 기준 등(안 제7조~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10조 제2항 “부설 고등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충청북도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견이 다른 사립고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 청소년이 다니는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에 충청북도가 특별히 지원을 한다하여도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 및 산업체가 설립·경영하는 고등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입학방법·교육비 부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과 산업체가 설립·경영하는 고등학교(이하 "부설 고등학교"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관계 법령·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산업체의 구분) ①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부설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는 산업체는 해당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의 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로 한다.

② 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의 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나의 부설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4조(협조) 충청북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하 "근로청소년"이라 한다)의 취학권장
2. 취학대상자 선발에 관한 산업체와의 협의
3. 특별학급의 설치

제5조(특별학급의 설치) 교육감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

접한 고등학교에 특별학급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그 특별학급이 공업단지 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그 밖에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6조(부설 고등학교의 설립) 제3조에 규정된 산업체가 부설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같은 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가절차)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학과 및 교육과정) ① 특별학급 및 부설 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학급 및 부설 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각 교과의 교수요지·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현장실습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제2항의 현장실습 시간 수는 총 수업 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학방법) 특별학급 및 부설 고등학교의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산업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학급에 취학시킨 때에는 그 특별학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한다.

② 부설 고등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충청북도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수업료 등의 면제) 특별학급 및 부설 고등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그 밖에 수익자 부담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다만, 부설 고등학교의 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의 경비부담 등) ① 교육감은 특별학급 또는 부설 고등학교의 학생이 고용된 산업체가 폐업된 때에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당 특별학급 또는 부설 고등학교를 존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는 학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그 고용된 산업체를 퇴직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그의 희망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부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 및 교육감이 부담할 경비의 범위와 특별학급 또는 부설 고등학교의 존속기간 및 학생신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납부 및 집행 잔액의 사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가 부담할 경비는 매분기별로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다.

② 해당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경비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급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교직원) ① 특별학급에 두는 교직원 정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부설 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 정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수당지급) ①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 금액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② 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존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6조(교육용 시설 등의 기준) 부설 고등학교의 교육용 시설·설비의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실

가. 보통교실 수는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로 한다. 다만, 시간차를 두어 부제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실을 공동사용 할 수 있다.

나. 학급당 실내면적의 기준은 90㎡로 한다. 다만, 학급규모에 따라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내면적을 감소할 수 있다.

2. 특별교실

음악·미술·시청각교육을 위한 특별교실은 보통교실 크기의 교실 1개 이상으로 하되, 공동사용 할 수 있다.

3. 도서실·상담실·보건위생시설·체육장 및 교사대지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별학급에 두는 교직원정원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교원정원의 기준		사무직원정원의기준	비 고
교 감	1명	사무직원 1명 이상 기능직 1명 이상	1. 교원과 사무직원은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2. 교무부장과 학생부장은 학급담임교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사	학급당 1명의 학급담임교사와 특별학급의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소요인원으로 하되, 그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주간학급 교원정원의 범위내로 한다.		
보건교사	1명 이상		

[별표 2]

산업체부설 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정원의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인문고교	상업고교	공업고교	비 고
교원정원	교 장	1명	1명	1명	1. 해당 산업체 임직원 중 교 원자격증 소 지자가 있을 때에는 겸임할 수 있다. 2. 교무부장과 학생부장은 학급담임 중 에서 임명하 다.
	교 감	1명	1명	1명	
	교 사	3학급까지 학 급당 3명 이상, 3학급을 초과 할 때에는 초 과하는 1학급 마다 1명 이 상을 증치	3학급까지 학 급당 3명 이상, 3학급을 초과 할 때에는 초 과하는 1학급 마다 1.4명 이 상을 증치	3학급까지 학 급당 3명 이상, 3학급을 초과 할 때에는 초 과하는 1학급 마다 1.6명 이 상을 증치	
	보건교사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사무직원 정 원 의 기 준	사무직원 기 능 직	2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사무직원 및 기능직은 해당 산업체의 임직 원이 겸임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4호, 2012.3.21, 일부개정]

제48조(학과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 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4.20] [대통령령 제23746호, 2012.4.20, 일부개정]

제43조(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1.2.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 2011.2.9, 타법개정]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설립계획서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

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1. 학교의 종별·명칭·위치·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지확보계획
3. 교사건축계획
4. 소요경비조달계획
5. 설립자의 이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 계획

②제1항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③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로서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1항의 학교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등의 통보)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여부를 제출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초·중

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말한다)에 규정된 사항 및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을 기재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에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월이전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시·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1.20>

제5조(학교설립인가의 통보등) ① 시·도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